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나598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나5987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가단33727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교대(소송구조)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수

변론종결 2022. 12. 14.

판결선고 2023. 1. 1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가단3372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현금 1억 5,700만 원에 관하여 2016. 9.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74,518,99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518,9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경우에는, ① 그 성립시기를 손해발생시가 아니라 가해행위시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에 피보전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거나 ② 고도의 개연성을 따짐에 있어서도 이를 넓게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거나 ③ 기초적 법률관계 성립 당시가 아닌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고도의 개연성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만으로 원고에게 C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채권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②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2. 11. 26.로부터 5년 넘게 지나 발생한 원고의 채권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③ 고도의 개연성은 기초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바, 기초적 법률관계 성립 당시가 아닌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고도의 개연성을 따질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호원, 판사 이은명, 판사 정일예